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6.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461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26. 복지문화위원장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6.)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우종혁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가림판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의 빈 공간을 가리는 안심가림판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I. 제안경위

- 본 건은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제안의 건으로 보충설명 차원에서 제안 경위 및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가림판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2024. 10. 31. 서울수서경찰서는 공중화장실 칸막이 위나 아래로 손을 뻗어 불법촬영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막이 상하부 가림막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 달라는 공문을 강남구의회와 강남구에 보낸 바 있음.
- 이에 위원장 제안으로 공중화장실 칸막이에 가림판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지역의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관할 경찰서의 협조 요청 사항이라는 점과 범죄 예방의 시급성을 고려한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II. 검토 의견

- 제안 경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은 화장실 칸막이 상하부 가림막 등의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에 제3항을 신설하였음.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 7. 21. 부터 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에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되어 있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부칙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대변기 칸막이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5의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5의3.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의4.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과 천장 간의 거리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623호, 2023. 7. 11.>

이 영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즉, 2023. 7. 21.부터는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개정된 법령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하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설치된 대변기 칸막이의 경우 이러한 설치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불법촬영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공중화장실 및 불법촬영 점검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공중화장실 현황 및 불법촬영 점검			
○ 공중화장실 현황			
합 계	공중화장실	공공개방화장실	민간개방화장실
433	107	84	242
○ 점검주기 : 연4회(분기별 1회)			
○ 점검내용 :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비상벨 설치 확인			
○ 점 검 자			
- 공중화장실 및 공공개방화장실 : 강남구(소관 부서) 및 소관 공공기관			
- 민간 개방화장실 : 자원순환과(모니터링요원 28인)			
○ 장비내역 : 총28대(전파탐지기 14대, 적외선탐지기 14대)			

(출처: 자원순환과)

- 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11/8 오후 5시경).
- 상당 부분의 공중화장실이 법 개정 전에 설치된 것이므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 실태 파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안심 가림판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의 안 번호	복문-2
-----------	------

제안연월일 : 2024. 11. 26.

제안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가림판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의 빈 공간을 가리는 안심가림판 등의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의 빈 공간을 가리는 안심가림판 등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기준) ①·② (생략) <u><신 설></u>	제5조(설치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 여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 막이의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의 빈 공간을 가리는 안심가림판 등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u>